

 		<h1>설명자료</h1> <p>2019. 10. 8.(화) 배포</p>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	담당자	팀 장 조영기 (☎ 02-3668-1333) 주무관 이지연 (☎ 02-3668-1332)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내일신문(장세풍기자) / 2019. 10. 8. [화]
- 제목 :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 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수거가방,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시험 후에는 성적 및 필적 대조를 통하여 대리응시자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활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제60회('18.10.21.) 시험에는 중국 4개 지역(청도, 대련, 연태, 천진)에 TOPIK사업단 점검단을 파견하였고, 제63회('19.4.21.) 시험에는 TOPIK사업단, 주중대사관 교육관실,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 5개 지역(북경, 서안, 정주, 성도, 연길)의 시험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정 : 2013.07.01.

6차 개정 : 2018.1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수험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효력)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의 공식적인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제3조(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등

제4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의 유형은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와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하여 그 처벌 수위를 정한다.

1.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
 - 가.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나. 시험 시간 시작 전·종료 후에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자가 따르지 않는 행위
 - 라.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2.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 가.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나.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나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다.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아이패드, PDA 등 일체)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 라. 다른 수험자에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마.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바.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사. 문제 유출·배포와 관련된 행위
- 아. 성적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위·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공적으로 사용한 행위
- 자.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6조(부정행위의 적발 시기) 부정행위의 적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현장 적발

시험 당일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 현장 적발 내용을 즉시 조서로 작성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한다.

2. 사후 적발

시험이 종료된 후 부정행위 민원 등과 관련하여 답안지 대조, 응시자의 필체 대조, 응시자 이전 성적 조회, 신원 확인 등 자세한 조사과정을 거친 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TOPIK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 처리 결정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지 않는다.

2. 단순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회차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3. 계획적 부정행위(중대한 부정행위)

가. 해당 회차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까지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나.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제한다.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라.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학교 등)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 통보

4. 사후 부정행위자 적발시 처리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증명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위 2, 3항을 따른다.